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한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. 1. .

발 의 자 : 이한구·정수영·

강병수·김영분 의원

(찬성자 : 6 인)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 구성·운영 반영

2. 주요내용

-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 함(안 제6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(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)”를“(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이 경우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) ① 시 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 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 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을 청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6조(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) ①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----- 있으며, 이 경우 사회적 공감감이 확보된 도 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 계획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 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4조(공청회의 개최) - 제20조(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2조(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
관련법규 정비대상	
관련자료	

관계법령 발취사항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4조(공청회의 개최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2.6]

제20조(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)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"는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"로, "광역도시계획"은 "도시·군기본계획"으로 본다.<개정 2011.4.14,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2.6]

[제목개정 2011.4.14]

[시행일:2012.7.1]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8.5, 2012.4.10, 2013.3.23>

1. 공청회의 개최목적
2.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

3.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
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
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
수 있다.

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
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8.5, 2
013.3.23>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
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
이 정하거나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
라 한다), 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에 관한 조례(이하 "도시·군계획
조례"라 한다)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8.5, 2012.4.10,
2013.3.23>

[시행일:2012.7.1]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시민계획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 (재정지출 없음)

4. 작성자 : 산업위원회 이 한 구 의원